

2026년도 제1회 의정부보호관찰소 공무직근로자(무도실무관) 채용 공고

전자감독 정보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 분야

- 전자감독 정보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공무직근로자

☐ 인원 : 1명(남)

채용기관	채용인원	근무기관	근무지
의정부보호관찰소 (031-850-0301)	1명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898

※ 채용기관(본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소 및 산하 지소에서 순환근무 조정될 수 있으며, 지소에는 향후 신설되는 기관까지 포함됨

※ 근무기관은 관할구역,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 추이, 예산사정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담당예정 직무

- ☐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 분석 및 현장 확인, 출입제한구역 등 순찰 활동 보조
- ☐ 대상자 현황 관리, 전자장치 점검 및 회수
- ☐ 상시 출동 대기, 경보 발생 시 현장출동 및 현안처리, 증거 수집,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 보조,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 ☐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소 업무 보조

3 근무 조건

- ☐ 신 분 :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 계약 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무원직 근로자
- ☐ 근무 형태 및 시간
 - 교대근무 :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다음 날 08:00 또는 19:00 ~ 다음 날 09:00), 비번
 - ※ 교대근무(예시, 변동가능) : 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등
 - ※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2시간 부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 ☐ 보 수 : 월 238만원(기본급+정액급식비) 상당(휴일, 야간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 ☐ 후생 복지 : 4대 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 ☐ 근무 예정지 :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 ☐ 비 고 : 근무형태 및 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 변경은 근로자 및 기관 간 협의될 경우 가능

4 선발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비 고
채용공고	2026. 8. 13.(목) ~ 2026. 8. 21.(금)	·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 · 나라일터홈페이지(www.gajobs.go.kr)	
응시원서 접수	2026. 8. 14.(금) ~ 2026. 8. 21.(금)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공휴일 제외) - 8. 17.(월)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접수 불가 ※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택배 및 퀵 서비스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불가
서류전형 심사	2026. 8. 26.(수)	· 의정부보호관찰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27.(목)	·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	
면접시험	2026. 9. 1.(화)	· 의정부보호관찰소	
자격증 조회 등	면접합격자 자격증 조회, 채용결격사유 등 조회		관계기관 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9.(수)	· 개별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	
신원조사	신원조사 의뢰를 통한 최종 확인		
채용 계약	신원조사 결과 이상 없을 시 즉시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 예정

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는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정년(60세) 미만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규정상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근로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규정 상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④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나. 응시 자격

☐ 무도 자격 3단 이상 및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

[무도 단증 인정기준]

- 무도 종류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함 (※ 태권도 품은 응시불가)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단체가 인정한 단증에 한함
 - 태권도(국기원),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
 - 합기도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단증에 한함

※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단증은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

다. 우대 요건

□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산관련 자격증 인정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채용은 채용예정인원 1명으로 법정가점 미적용(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만 적용)

□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동점자 발생 시 우선 합격만 적용)

6 선발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 :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정량·정성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를 선발
 - *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게 될 경우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임에 따라 10배수(10명)로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예정
- 서류전형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자가 선발 배수(10배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등 직무관련 전문자격(55점)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0점)
- 범죄경력 여부 등(20점)
- 전산 관련 자격증(5점)

나.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 방식 : 개별면접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평정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위원 전원의 평정 결과(상·중·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공무원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 무도 단증 단수가 높은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 (무도실무관)	1명	1명(채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한은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26. 8. 14.(금) ~ 2026. 8. 21.(금)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의정부보호관찰소에 직접 제출(대리 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겹봉투에 “응시원서 재증”이라고 표기 후 등기 배송 요망,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대리 접수도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처

응시원서 접수기관	주 소	전화번호
의정부보호관찰소 5층 행정지원과	(11763)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52	031-850-0301

8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제출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제출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필수제출
- 무도 단증 사본 1부 - 필수제출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제출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제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9호) - 필수제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 필수제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 필수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필수제출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
-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자격증 종류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서식 제12호) 1부 (해당자만 제출)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요건에 지역제한은 없으나 최종 합격자에 대해 별도의 숙소 및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12호)를 제출하여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단, 해당 분야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예비합격자 중 성적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관 또는 부서는 채용기관(지소 포함)의 업무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의정부보호관찰소 채용담당자(031-850-0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 리스트

성 명	응시분야	응시 근무기관
	공무직근로자(무도실무관)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원서 (필수)	
2. 자기소개서 (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6. 공정채용 확인서 (필수)	
7. 무도 단증 사본 (필수)	
8.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필수)	
9. 이력서 (필수)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11.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1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	
13.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필수)	
1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15.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자)	
16.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	
1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해당자)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O” 표시

*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의정부보호관찰소 공무직근로자(무도실무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합격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무예정기관 :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2026년 월 일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귀하

※ 응시번호		근무예정기관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성명	(한글)
※ 채용분야	공무직근로자(무도실무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우)			
무도단증		운전면허		
전자우편		복수국적 여 부		
전 화		휴대전화		

(인)

응 시 원 서 (부 본)				
2026년도 제1회 의정부보호관찰소 공무직근로자(무도실무관) 채용 시험				
※ 응시번호		근무예정기관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026년 월 일 의 정부 보 호 관 찰 소 장 (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가급적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고, 자필작성이 곤란한 경우 PC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기관에서 응시번호 부여)
4.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거를 기재하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를 기재하십시오.
5. '무도단종' 란에는 무도 종류와 단수를 기재합니다.
(예시 : 태권도 3단, 유도 4단) : 태권도 3품·4품은 3단 또는 4단으로 반드시 변경하여 응시
6. '운전면허' 란에는 소지한 운전면허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예시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1종 대형)
7. '복수국적 여부' 란에는 해당되는 외국 국적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복수국적자가 최종 합격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 분야	공무직 근로자(무도실무관)
-----	--	-------	----------------

◎ 자기소개서

휴면명조 14p로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6. . .

작성자 0 0 0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휴면명조 14p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6. . . 작성자 : (인/서명)

【작성요령】

- ①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직무 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
- ②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병역사항, e-메일, 자격사항, 국적 등
수집 및 이용목적	공무직근로자 채용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 수집항목	범죄경력자료 등
수집 및 이용목적	공무직근로자 채용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운전면허번호 등
수집 및 이용목적	공무직근로자 채용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관련 자료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관련 자료 ·기타 채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시행 2026년도 제1회 공무원근로자 (무도실무관)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생년월일 :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 ③ 보유기간 :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의정부보호관찰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근로자 응시결격 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별지서식 제11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채용방법	공개경쟁	채용직위(직급)	공무직근로자 (무도실무관)
	채용사유	결원 충원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2026. 9월 중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① 에서 “예”라고 답변한 경우만 체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12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